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11일 23시 11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농업정책과	3
비료수입업 폐업신고	3

비료수입업 폐업신고

2017.07.04 조회수 220 등록자 박지연
10:40

- ✓
민원사무명
비료수입업 폐업신고

- ✓
민원내용
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✓
관계법령
비료관리법 제12조, 시행규칙 제11조

- ✓
구비서류
비료수입업신고증 1부

- ✓
처리부서
농업정책과

- ✓
협의부서

- ✓
접수
여수시 농업정책과

- ✓
수수료
없음

- ✓
처리기간
즉시

- ✓
기타사항

- ✓
흐름도
신고서작성 - 처리

- ✓
기타참고사항

<p>첨부파일</p> <p>전체(Zip)다운로드</p>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margin-right: 10px;">  </div> <div> <p>[별지 제16호서식] 비료수입업(폐업, 휴업)신고서.hwp (195 hit/ 38.0 KB) ↓</p> <p>미리보기</p> </div> </div>
--	---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